

신탁계약변경 신구조문 비교표

펀드명 : 코람코퍼스텝해피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0호

개정 시행일 : 2014.11.28 예정

조항	구	신	비고
	[제정 2014.11.10], 시행일 2014.11.18	[제정 2014.11.10], 시행일 2014.11.18 [개정 2014.11.28] 시행일 2014.11.28	
제5조	제5조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) ① ~ ② <생략>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. 다만,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제5조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) ① ~ ② <좌동>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. 명확히 하면 최초설정일은 2014년 11월 19일이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 이다. 다만,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4.11.28>	최초설정일을 실제 신탁원본 최초 납입일인 2014년 11월 19일로 명확히 기재하여 신탁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함.
제14조	제14조 (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) ① ~ ⑦ <생략>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<생략> 2.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<이후 생략>	제14조 (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) ① ~ ⑦ <좌동> ⑧ <좌동> 1. <좌동> 2.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<이후 생략> <개정 2014.11.28>	제37조 수익자총회 조항 개정에 따른 반영
제17조의2	제17조의2(자금의 차입)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자총회에서 다음 각호의 내용과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<이후 생략>	제17조의2(자금의 차입)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다음 각호의 내용과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<이후 생략> <개정 2014.11.28>	제37조 수익자총회 조항 개정에 따른 반영
제31조		제31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제1기 2014.11.19 ~ 2015.05.18 제2기 2015.05.19 ~ 2015.11.18 제3기 2015.11.19 ~ 2016.05.18 제4기 2016.05.19 ~ 2016.11.18 제5기 2016.11.19 ~ 2017.05.18 제6기 2017.05.19 ~ 2018.11.18 <개정 2014.11.28>	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함.
제37조(수익자총회)	제37조(수익자총회) ① ~ ⑧ <생략>	제37조(수익자총회) 이 투자신탁은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해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1.28>	법 제249조 제4항 사모집합투자기구 특례조항 반영
제38조	제38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 ① ~ ④ <생략>	제38조 <삭제> <개정 2014.11.28>	제37조 수익자총회 조항 개정에 따른 반영

제39조	제39조(보수) ① ~ ⑤ <생략>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보수 및 제1항제3호, 제4호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<u>연 1,000분의 2.5(25bp)</u> <이하 생략>	제39조(보수) ① ~ ⑤ <생략>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보수 및 제1항제3호, 제4호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<u>연 1,000분의 2.0(20bp)</u> <개정 2014.11.28> <이하 생략>	보수율 인하
제41조	제41조(기타 운용비용 등) ① <생략> ② 제1항에서 "비용"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 1~8. <생략> 9. <u>수익자총회</u> 관련비용 <이하 생략>	제41조(기타 운용비용 등) ① <생략> ② <좌동> 1~8. <좌동> 9. <삭제> <개정 2014.11.28>	제37조 수익자총회 조항 개정에 따른 반영
제42조	제42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<u>수익자총회의 결의</u> 를 거쳐야 한다.	제42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<u>수익자전원의 동의</u> 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4.11.28>	제37조 수익자총회 조항 개정에 따른 반영
제43조	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<u>수익자총회 결의</u> 를 거쳐야 한다. ②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<u>수익자총회 결의</u> 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5 <생략> ③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<u>수익자총회 결의</u> 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3 <생략>	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<u>전체 수익자의 동의</u> 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11.28> ②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<u>수익자전원의 동의</u> 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5 <생략> <개정 2014.11.28> ③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<u>수익자전원의 동의</u> 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3 <생략> <개정 2014.11.28>	제37조 수익자총회 조항 개정에 따른 반영
제44조	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 <생략>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. <u>수익자총회</u> 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	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 <생략>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. <u>수익자전원의 동의에 의한</u> 투자신탁 해지 결의 <개정 2014.11.28>	제37조 수익자총회 조항 개정에 따른 반영
제46조	제46조(투자신탁의 합병) ① <생략>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<u>수익자총회의 결의</u> 를 거쳐야 한다.	제46조(투자신탁의 합병) ① <생략>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<u>수익자전원의 동의</u> 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4.11.28>	제37조 수익자총회 조항 개정에 따른 반영
제49조	제49조(수익자총회의 특례 등) ㉔ <u>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동 사항은 수익자총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한다.</u> ② <생략>	제49조 <삭제> <개정 2014.11.28>	제37조 수익자총회 조항 개정에 따른 반영